

'92년도 에너지 절약정책 방향 (The Outline of Energy Conservation Policy in 1992)

김정곤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I. 서 -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그 결과 작년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액은 최근 3년사이에 두배이상 늘어난 123억불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급증 현상 및 이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증가는 국민경제 운용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의 추진은 국민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요한 경제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공급시설 확충에 있어서의 막대한 자금 및 건설 기간소요로 인한 애로 발생 및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에너지사용규제 움직임으로 볼때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의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해를 『에너지절약 원년의 해』로 삼아 『에너지소비절약종합대책('92.4.30)』을 수립·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92에너지절약정책 방향 설명하고자 한다.

II. '92년도 에너지 절약정책

1. 기본방향

'92년도 에너지 절약정책은 단순히 전기, 석유등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 더하여 산업구조의 개편, 수송체계개선, 각종 물자절약 및 재활용을 통해 근원적으로 에너지 수요발생을 최소화 하며 나아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근검·절약운동』 『쓰쓰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목표로 근본적인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화시책을 중기과제로 확정하여 꾸준히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이를 솔선하여 감내하여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집중토록 하고 있다.

2. '92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현황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통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을 극복한 바 있고 또한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운동』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간 2만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19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6년까지 산업부문 에너지의 10%절감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에 있어서는 전국 118개 대형건물에 대해 특별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형건물 신축시 빙축열 또는 가스냉방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여름철 전력수요 구조개선을 추진한바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시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의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금년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냉장고, 승용차, 조명기기, 에어컨을 대상으로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촉진 및 생산단계에서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도시개발, 공단조성, 항만철도, 공항건설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사전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에너지관련 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에너지관리진단과 시설투자를 효율적으로 대행하는 절약 전문기업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절약시책을 통하여 절약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에 다소 이완된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은 크게 제고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 되고 있으며 전력의 최대수요 증가율 또한 지난 5년간 평균 수준(14.0%)의 절반인 6.9%를 기록하였다.

Ⅲ. 결론 - 향후 추진방향 -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에도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핵심절약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과 동시에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대상품목 확대하고 대도시 밀집지역의 가정난방은 지역난방체제로 유도하여 연료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중한 에너지를 아껴쓴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사소한 노력이라도 실천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만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실시

가. 제도의 목적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절약형 기술개발의 여지가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해 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 소비자들로 하여금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단계에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제품을 생산토록 유도

나. 추진경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 신설 : '91. 12. 14
- 관련고시 규정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협의 : '92. 1~7
-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 '92. 8. 20

다. 현황

- 대상품목 (총 4개 품목)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 효율기준 설정 및 등급부여 기준
 -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설정
 - 선진외국의 효율수준을 참고하고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수준, 기업의 원가 부담등을 고려하여 3~5년내에 달성하여야 할 효율수준으로 설정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설정
 -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의 확산예방과 절약형 기술개발의 유도를 위해 1년 이내에 실행하여야 할 수준으로 설정

- 에너지 효율등급의 부여
- 목표효율의 달성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효율수준에 근접한 제품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

○ 등급의 분류 및 표시

- 등급의 분류
 - 목표효율의 달성정도에 따라 1 ~ 5 단계의 등급을 부여
- 등급의 표시
 - 기자재에 표시
 - 냉장고, 에어컨의 경우 기자재의 전면 또는 측면에 표시
 - 조명기기의 경우 포장물에 표시
 - 승용차의 경우 제품의 측면 또는 후면에 표시
 - 기자재 광고시 표시
 - 제품안내서 (카달로그)
 - 신문의 경우 5단 크기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광고
 - T . V

○ 실시시기

- 냉장고 · 승용차 : '92. 9. 1
- 조명기기 : '92. 10. 1
- 에어컨 : '93. 1. 1

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효율기준 미달시 공표
- 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효율등급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 참고 >

等級賦與 現況

I. 冷蔵庫 等級賦與 現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국 산 품	삼 성	-	11	12	-	1	24
	대 우	-	8	3	1	-	12
	금 성	1	6	13	1	-	21
	소 계	1	25	28	2	1	57
수 입 품		-	9	11	1	4	25
전 체		1	34	39	3	5	82
(비율 : %)		(1.2)	(41.5)	(47.6)	(3.7)	(6.0)	(100)

주) 냉장고의 경우 공단에서 등급을 부여한 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II. 乘用車 等級賦與 現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국 산 품	현 대	-	5	16	6	1	28
	기 아	1	8	13	4	-	26
	대 우	-	4	6	5	-	15
	대우조선	1	-	1	-	-	2
	소 계	2	17	36	15	1	71
수 입 품		-	3	24	24	14	65
전 체		2	20	60	39	15	136
(비율 : %)		(1.5)	(14.7)	(44.1)	(28.7)	(11.0)	(100)

주) 승용차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등급을 스스로 표시한 후 그 결과를 9월30일까지 동력자원부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

Ⅲ. 조명기기 등급부여 현황

1. 형광램프

(단위 : 품목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국 산 품	급호전기	-	1	3	1	-	5
	급동조명	-	2	2	1	-	5
	별표형광등	-	-	-	-	4	4
	통일전구	-	-	-	-	3	3
	신광전기	-	-	-	2	2	4
	한국GE조명	-	-	1	4	1	6
	신광기업	-	-	-	-	2	2
소계		-	3	6	8	12	29
수 입 품	GTE	-	1	-	-	-	1
	GE	-	1	-	-	1	2
	Durotest	-	-	1	-	-	1
	Siam	-	-	-	1	2	3
	중국전기	-	-	-	-	1	1
소계		-	2	1	1	4	8
계		-	5	7	9	16	37

2. 백열전구

(단위 : 품목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국 산 품	급호전기	-	6	-	-	-	6
	신홍전구	2	2	1	-	1	6
	우주램프	-	-	-	5	1	6
	부궁화램프	-	-	3	2	1	6
	남영전광	-	-	4	1	1	6
	태양전구	-	-	1	3	-	4
	조양전구	-	-	2	2	-	4
	인광려	-	-	2	-	-	2
	고려	-	-	1	1	-	2
소계		2	8	14	14	4	42
수입품	필립스	-	1	-	1	-	2
계		2	9	14	15	4	44

에너지使用計劃 協議制度

I. 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 제도의 目的
 - 에너지低消費型 産業構造로의 전환 유도
 - 에너지使用效率 극대화
 - 에너지관련 社會間接資本의 적기 擴充

- 必要性
 - 에너지利用合理化의 예방적 기능
 - 社會間接資本의 적기 擴充 기능

II. 그 간의 추진경위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改正을 통한 근거규정 신설 : '92. 12. 1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 '92. 7. 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 '92. 7. 9

Ⅲ. 제도의 내용

1. 對象事業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이 實施하는 事業중

- .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조성사업
- .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만건설 사업
- . 5,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장

2. 협의시기

- 대상사업의 실시전(환경영향평가 협의시점과 균형을 맞춤)

3.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 檢討意見의 種類 :

- 에너지使用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
-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調整
- 사업시행의 延期 또는 再考
-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검토절차

사용계획제출 → 심의위원회의 심의 → 검토의견의 통보

Ⅳ. 협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協議內容 未履行時 制裁措置 :

-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 대한 履行促求
- 未履行 事業者에 대한 履行促求

※ 계속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협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協議內容 未履行時 制裁措置 :

-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 대한 履行促求
- 未履行 事業者에 대한 履行促求

※ 계속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